

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

-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등록지의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(도난당한 때에는 2개월) 이내에 등록지의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※ 과태료 기준

1. 정기검사 :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까지는 2만원
30일 초과시 :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누진
최고금액 40만원
2. 주박가 이번도로에 무단주기할 때 : 5만원
3. 등록사항 신고미이행 : 최고 20만원
4. 등록번호표 미반납시 : 최고 40만원

건설기계등록·검사증



안 동 시

4. 건설기계검사란					5. 등록사항 변경란			
구분	검사일	유효기간 (까지)	검사기관	담당자 성명	연번	변경일자	변경사항	확인
신규등록일 : 2016-02-02					경북07고6701			
정기검사	2019-02-12	2020-02-01	안전관리원경기등록사소	김태형				
정기검사	2020-01-08	2021-02-01	안전관리원경기등록사소	최시용				
정기검사	2021-02-25	2022-02-01	안전관리원인촌분경사소	최현중				
정기검사	2022-01-13	2023-02-01	안전관리원경남분경사소	김진우				
재기	2023 01.30	2024 02.01	경북	김재민				
* 주의사항 :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기재합니다.								